

2024년 1분기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

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1분기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월 12일

남 양 주 시 장

1. 지원개요

- 용자규모 : 120억원(제조업 70억원, 비제조업 50억원)
- 지원내용 : 협약 은행에서 받은 대출액 이자의 일부(1.3%~2.3%)를 지원
- 공고기간 : 2024. 1. 12.(금) ~ 2024. 1. 22.(월)
- 접수 및 신청기간 : 2024. 1. 12.(금) ~ 2024. 1. 22.(월) 09:00~18:00
- 지원대상 ※ 지식기반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업종 **[참고1] 확인**

운전자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제조업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남양주시 공장등록기업 중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•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 중 제조시설 연면적이 500㎡미만이고 「건축법」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, 근린생활시설,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※ OEM 방식으로 제조하는 기업의 경우 자사 상표권 및 OEM 계약서 보유 시 가능- 지식기반산업 및 정보통신산업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「건축법」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, 근린생활시설,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으로 지식기반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- 비제조업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지역 경제 발전과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본사와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남양주시에 소재하고 합법적 용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• *상시근로자 5인 이상 또는 최근년도 매출액 15억원 이상 도소매업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*신청일 및 최근 6개월 기준• 건설업 ※ 종합건설업 제외• 자동차(종합·소형)정비업, 자동차해체재활용업- 반도체 패리스 산업 관련 기업- 자연재난 및 화재 피해 기업(위 업종에 한함) ※ 수시 접수, 6개월 내 증빙서류 제출
시설자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남양주시 산업단지 입주 계약 체결기업- 타 시·군에서 관내로 유치하여 개별입지 공장설립승인 및 건축허가를 득하고 공장건립활용계획을 수립한 개별입지 유치기업- 공공사업·공익사업으로 편입되어 남양주시 내로 이전하는 기업(운전자금 지원대상 업종에 한함)※ 시설자금은 토지매입비, 건설비용에 한함

○ 지원 제외대상

-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상환 중인 업체
-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
- 관외 이전, 휴·폐업, 매매, 임대, 지원 제외 업종, 허위 신청업체 등
-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있는 업체

2. 지원기준

○ 융자기간 및 융자한도액

구분	융자기간	업체당 융자 한도액	비고
운전자금	2년(2년거치 일시상환) 4년(1년거치 3년상환) 중 택1	5억원 이내	매출액 별 차등지원
시설자금	5년(2년거치 3년상환)	10억원 이내	

○ 대출금액 및 이차보전율

구분	매 출 액	대출금액 / 업체	이차 보전율
운전 자금	5억원 미만	5천만원 이내(매출액 범위 내)	2.3%
	5억원 이상 ~ 10억원 미만	1억원 이내	2.1%
	10억원 이상 ~ 25억원 미만	2억원 이내	1.9%
	25억원 이상 ~ 50억원 미만	3억원 이내	1.7%
	50억원 이상 ~ 100억원 미만	4억원 이내	1.5%
	100억원 이상	5억원 이내	1.3%
시설 자금	- 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 기업 - 개별입지 유치기업 - 공공사업·공익사업으로 편입되어 남양주시 내로 이전하는 기업	10억원 이내	1.5% (토지매입 및 건설비용)

※ 사업 개시 7년 이내 창업기업 육성 차원으로 매출과표 등 자료가 없는 기업에 한해
2천만원 한도 융자 지원

○ 대출은행 : 총 6개 협약은행

- 국민은행호평종합금융센터 ☎ 559-4920
- 농협은행남양주지부 ☎ 550-4724
- 우리은행다산지점 ☎ 557-0567
- 기업은행호평지점 ☎ 559-6114
- 신한은행다산지점 ☎ 556-0962
- 하나은행호평지점 ☎ 591-1111

※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(부동산, 신용보증) 능력이 있어야 하며, 대출실행 시점, 담보 및
기업신용 평가등급에 따라 대출금리가 다르게 책정될 수 있음

※ 운전자금 적용금리는 기업의 대출실행 시점에서 기업 신용도에 따라 기업에 유리한 금리를
적용할 수 있음

3. 지원결정 및 통보

- 신청업체에 대한 적격 여부와 붙임 평가표에 의한 업체별 평가를 통하여 선정 업체와 금융기관에 지원결정 통보
- 대출지원 한도액은 업체별 매출액을 근거한 대출금액 내에서도 신청 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결정될 수 있음
- 평가 시 동점 업체는 사업자등록증 기준 창업일로부터 업력이 짧고 매출액이 낮은 업체 순으로 정함

4. 유의사항

- 동 자금 지원결정 업체는 市 협약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하는 것으로 취급 은행에서 신용보증서, 부동산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, 대출지원 결정 업체로 선정되었더라도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채권보전 능력이 부족한 경우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
- 대출에 따른 대출담보, 이자불입, 상환방법 등은 대출취급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
- 자금사용 기업은 市의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, 요구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
- 운전자금의 용도는 반드시 기업의 직접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. 그 외의 용도(개인 유용 및 부동산 구입 등)로 사용한 경우 즉시 환수 조치 됨
- 대출 후 휴·폐업 또는 타 시·군으로 이전할 경우 지원받은 이차보전금은 환수 조치 됨(사유 발생 시 취급기업 및 은행은 市에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)

5. 지원절차 및 구비서류

- 지원절차



- 신청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24. 1. 12.(금) ~ 1. 22.(월) 09:00 ~ 18:00
- 접수처 : 남양주시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(☎590-2282, 담당자 조하기 주무관)
- 접수방법 : 방문 또는 전자메일 접수(hagi12345@korea.kr)

※ 전자메일 발송 후 반드시 유선전화(☎590-2282)로 접수여부 확인

- 주소 : 남양주시 경춘로 1037(남양주시청) 별관 4층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

○ 구비서류

구 분	제 출 서 류
공통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신청서(사업계획서,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, 이행확인서 포함) 1부 ②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법인에 한함)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③ (제조업)공장등록증, 공장미등록 업체는 사업장 소재지 건축물관리대장 1부 ④ (지식기반산업, 정보통신산업)업종 증빙자료, 건축물관리대장 1부 ⑤ (건설업)건설업등록증, 건축물관리대장 1부 ⑥ (자동차관리사업)자동차관리사업증, 건축물관리대장 1부 ⑦ (도소매업)상시근로자 5인 이상 또는 매출액 증빙서류, 건축물관리대장 1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상시근로자 :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상시근로자 증빙 가능한 서류(최근 6개월) - 매출액 : 재무제표증명 ⑧ 최근 2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(2021, 2022) 또는 재무제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재무제표는 간인(세무사 확인 도장) 있어야 함(2023년 보유 시 제출 가능) ⑨ 최근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증명원(1년치, 관할세무서장 필) 1부 ⑩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(관할세무서장 필) 각 1부
해당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여성기업 : 여성기업확인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장애인 고용기업 :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, 장애인등록증 사본 장애인기업 : 장애인기업확인서 사회적기업 : 사회적기업 인증서 ② 최근 3년간 수출실적 증명서(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) ③ 2023년도 신규채용 증명서류 :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, 재직증명서 ④ 특허, 산업재산권, 신기술, 국내외품질인증규격, 품질시스템인증서 등 인증서 사본 ⑤ 유망중소기업 선정 증명서류